

DDA 2008년 6월 농업협상 및 미국 2008 농업법의 영향*

신 유 선

DDA 각료회의가 7월 21일부터 제네바에서 개최기로 결정됨에 따라 라미 총장은 참가국 각료들이 늦어도 7월 19일까지는 제네바에 도착하여 양자회담, 소규모 회의 등의 준비에 임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¹⁾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²⁾가 7월 21일부터 제네바에서 개최기로 결정됨에 따라 라미(Lamy) 총장은 참가국 각료들이 늦어도 7월 19일까지는 제네바에 도착하여 양자회담, 소규모 회의 등의 준비에 임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각료회의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각료들의 결정(Straight Choice)이 가능한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NAMA)³⁾ 의장 3차 수정안⁴⁾을 만들기 위하여 의장이 주재하는 주요국 심층회의(Room D)⁵⁾ 협상이 재개될 예정이다.

* 본 내용은 국내외 DDA 관련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유선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shinys@krei.re.kr 02-3299-4287)

- 1)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Doha)'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아홉 번째 다자간무역협상을 말한다. 이전의 '라운드'라는 명칭대신에 개도국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도하개발아젠다'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협상은 WTO 152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며, 2008년 현재 세부원칙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 2) WT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고 통상 2년에 한 번 열린다. 각료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동안에는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 3) DDA 협상에서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업이외의 물품 즉, 공산품에 대해서도 협상을 한다. 농업 협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반영하여 농산물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비농산물협상'이라고 한다.
- 4) 3차 수정안 회람 시기는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 5) 농업협상그룹 의장이 초청한 주요 협상그룹의 대표국과 주요 회원국으로 구성된 37개 회원국이 모여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회의를 말한다. 회의가 개최되는 WTO 본부 회의실의 이름을 따서 처음에는 Room E 회의라고 불렀으나 현재 Room E 회의실이 수리중이어서 Room D에서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Room D" 참가국과 가입된 그룹 현황 : 아르헨티나(케언즈 그룹, G20), 호주

라미 총장은 그린룸(Green Room)⁶⁾ 프로세스가 이미 수평적 협의(horizontal process)⁷⁾ 수준에 와 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는 협상 일정(process)에 대한 논의가 주가 되었으나, 향후 실질적 사안(substance)에 대한 협의가 강화될 예정이며, 3차 세부원칙(Modalities)⁸⁾ 수정안 회람 이후에는 문안 협의 수준까지 가는 세부적인 협의(more precise term)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라미 총장은 3차 세부원칙 수정안 회람 이후에는 문안 협의 수준까지 가는 세부적인 협의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1. DDA 농업협상 추진 경과

2001년 11월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UR)협상⁹⁾ 결과의 토대 위에서 시장 개방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목표하에 DDA 협상이 출범하였다. 2003년 9월 칸쿤(Cancun) 각료회의에서 기본골격 합의에 실패하였으나 2004년 7월말까지 우선 기본골격만의 타결을 목표로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하여 20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기본골격이 채택되었다.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향후 DDA 협상일정을 마련하고, 수출보조 철폐 일시에 합의함으로써 DDA 협상진전의 모멘텀을 유지하였다. 2006년 7월 국내보조, 시장접근 등 주요 부문에서 미국과 EU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라미(Lamy) 사무총장은 협상의 잠정 중단을 선언하였다.

(케언즈 그룹), 베닌(Cotton 4, 아프리카 그룹, 최빈개도국(LDC)),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지역 그룹(ACP), 브라질(케언즈 그룹, G20), 중국(G33, G20), 콜롬비아(케언즈 그룹, 열대작물 그룹), 코스타리카(케언즈 그룹, 열대작물 그룹), 쿠바(G33, 소규모취약국가(SVE)), 도미니카공화국(G33, 소규모취약국가(SVE)), 에콰도르(열대작물 그룹, 신규가입국), 이집트(G20, 아프리카그룹), EU, 인도(G33, G20), 인도네시아((G33, G20, 케언즈 그룹), 자메이카(G33, SVE, ACP), 일본(G10), 케냐(G33, 아프리카, ACP), 한국(G33, G10), 레소토(LDC, 아프리카, ACP), 모리셔스(G33, ACP, 아프리카), 말레이시아(케언즈 그룹), 멕시코(G20), 뉴질랜드(케언즈), 노르웨이(G10), 파키스탄(케언즈 그룹, G20, G33), 파나마(G33, 열대작물), 파라과이(케언즈 그룹, G20, 열대작물), 필리핀(G33, G-20, 케언즈 그룹), 스위스(G10), 태국(케언즈 그룹, G20), 터키(G33), 우간다(아프리카, LDC, ACP), 우루과이(케언즈 그룹, G20), 미국, 베네수엘라(G33, 열대작물, G20).

- 6) WTO 사무총장이 초청한 20여 개국의 협상수석대표들이 모여 중요 안건을 다루는 회의로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는 의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해 주로 개최된다. 회의가 개최되는 WTO 회의실의 벽지색깔이 녹색이어서 'Green Room'회의로 이름 붙이게 되었다.
- 7) DDA협상은 최종적으로는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등 모든 분야를 동시에 일괄 타결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으므로 각 분야별 협상을 거친 후 분야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부문 간 협상 과정을 거치게 된다.
- 8) 세부원칙은 관세와 보조금을 감축하는 폭, 감축기간 등 구체적 수치를 담은 문서인데 세부원칙이 타결되면 각국별로 세부원칙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적은 문서 즉, 이행계획서(Schedule)를 WTO에 제출한다. 이행계획서가 세부원칙에 따라 잘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WTO 회원국들이 검증을 하고 검증이 끝나면 DDA 협상이 종결된다.
- 9) 1986년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통상장관회의에서 시작되어 1994년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종결된 여덟 번째 다자간무역협상을 말한다. 과거 7차례의 다자간무역협상이 대체로 공산품 교역에 한정되어 있었던 반면, UR협상은 농업, 지적재산권, 서비스 등 무역의 대부분 분야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농업 및 NAMA에 쟁점이 남아있어 이번 각료회의 전까지 이견을 최대한 좁히고 타협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상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11월 협상재개를 선언하였으며, 2007년 1월 27일 스위스 다보스포럼을 계기로 WTO 소규모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DDA 협상을 본격적으로 재개기로 합의하였다. 농업협상그룹 팔코너(Falconer) 의장은 다자협상에서 주요쟁점에 대한 논의의 진전을 위해 2007년 4월과 5월 두 차례 의장 문서를 제시하였다.

2007년 6월 미국, EU, 인도, 브라질 주요 4개국은 장관급 회동을 통해 합의도출을 시도하였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2007년 7월 팔코너 의장은 세부원칙(Modalities) 초안을 배포하였고, 이어 그간의 논의 진전을 반영하여 2008년 2월 세부원칙 1차 수정안과 5월에 세부원칙 2차 수정안을 배포하였다.

2008년 6월 25일 라미 사무총장 주재로 개최된 그린룸 회의에서 DDA 각료회의를 7월 21일부터 개최기로 결정하였다. 아직 농업 및 NAMA에 쟁점이 남아있어 이번 각료회의 전까지 이견을 최대한 좁히고 타협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상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최근 협상 동향

세부원칙 2차 수정안 배포 이후 개최된 첫 번째 비공식 전체회의에서 주요국은 2차 수정안을 기초로 논의를 진행할 의사를 밝히면서도 기존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팔코너 농업협상그룹 의장은 지난 5월 19일 세부원칙 2차 수정안을 배포하였다.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¹⁰⁾의 개수 및 TRQ 증량수준, 특별품목(Special Product, SP)¹¹⁾의 개수, 보조금 감축수준 등 주요 내용은 기본적으로 2월 배포된 1차 수정안의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민감품목 소비량 계산방법 등 최근의 논의 사항을 반영하였다.

세부원칙 2차 수정안 배포 이후 개최된 첫 번째 비공식 전체회의에서 주요국은 2차 수정안을 기초로 논의를 진행할 의사를 밝히면서도 기존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G20¹²⁾ 및 케언즈 그룹(Cairns Group)¹³⁾은 명시적인 관세상한(Tariff Capping)¹⁴⁾ 도입과 선진국의 보조 감축을 촉구하고 있다. G33¹⁵⁾은 특별품목(SP) 및 개도국 특

10) 민감 품목은 관세감축을 덜 할 수 있다. 다만 대가로 수입쿼터(TRQ)를 주어야 한다. 민감 품목의 개수는 국별로 전체 세 번(tariff lines)의 5% 내외에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감 품목의 대우 즉, 관세를 얼마나 적게 감축하고 TRQ를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는 DDA 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 가운데 하나이다.

11) 개도국들은 식량안보, 생계유지, 농촌개발의 필요를 감안하여 특별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 특별품목 개수와 대우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선진국, 농산물 수출개도국들과 이를 가능한 확대하려는 농산물 수입 개도국 간 입장차가 크다.

12) G20은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등 개도국 그룹을 말한다. 큰 틀에서 보면 미국, EU 등 선진국을 견제하는 개도국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13) 호주 케언즈에서 결성된 수출국 그룹으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네시아, 브라질, 우루과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과 케언즈그룹, G20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DDA협상에서 보다 실질적인 농산물 교역 자유화를 위해 수입국들의 대폭적인 시장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4) 관세 상한은 일정한 수준을 넘는 관세는 무조건 일정한 수준으로 끌어 내리자는 개념이다.

15) G33은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필리핀 등 개도국 SP를 옹호하는 나라들의 모임으로 개도국 특별품목 개수를 충분히 많이 인정하고 관세감축을 적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룹이다.

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¹⁶⁾ 관련 문안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 하면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G10¹⁷⁾은 민감 품목의 개수 및 대우와 특별긴급관세 (Special Safeguard, SSG)¹⁸⁾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세부원칙 2차 수정안을 토대로 협상그룹별, 주요쟁점별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의장은 기존의 주요국 심층회의(Room D) 대신 핵심문제에 대해서 10여국 내 외의 주요국을 초청하여 논의하는 소규모 고위급회의를 중심으로 타협안을 모색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관세 상한 및 SP & SSM 소규모 고위급회의에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민감 품목과 관련해서는 수입 쿼타(Tariff Rate Quota, TRQ)¹⁹⁾ 증량의 기준이 되는 세번별 소비량 산정을 위해 실품목에 포함되는 세번 (Tariff Line, TL)²⁰⁾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의장은 기존의 주
요국 심층회의의 대
신 핵심문제에 대
해서 10여국 내외
의 주요국을 초청
하여 논의하는 소
규모 고위급회의를
중심으로 타협안을
모색하고 있다.

3. 3차 수정안 외림과 각료회의 개최 전망

소규모 고위급 회의 및 주요국 심층회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7월 초 세부원칙 3차 수정안이 배포될 전망이다. WTO 라미 사무총장은 주 2회 그 린룸 회의를 개최하여 협상 진전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협상을 적극적으로 독려 하고 있다. 현재 농업부분 보다 NAMA에서 개도국 신축성²¹⁾에 대한 선진국과 개 도국간의 대립이 심하여 협상이 더뎠고 있다. 주요국들은 현재의 의장 수정안 (08. 5)으로는 각료회의의 토대가 되지 못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농업 및 NAMA 협상의 소규모 협의 결과에 따라 농업 및 NAMA 의장 3차 수정안의 회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²²⁾.

농업 및 NAMA 협
상의 소규모 협의
결과에 따라 농업
및 NAMA 의장 3차
수정안의 회람여부
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6) DDA 협상에서 개도국을 위한 SSM을 만들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협상중인데, 기존 의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SSG)와 유사한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7) G10은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농산물 순수입국 모임으로 농산물 관세를 지나치게 많 이 감축하는데 반대하는 그룹이다.
18)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농산물에만 적용하는 SSG 제도가 탄생하였다. 수입물량이 일정 수준 을 초과하거나 국제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자동적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추 가로 부과되는 관세를 '구제조치(Remedy)'라고 하기도 한다. SSG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는 것 이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국별로 특별 긴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농산물을 이행계 획서(Schedule)에 표시해 두었다.
19) 수입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정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콩에 대해 100톤까지는 5%의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100톤이 넘는 물량은 120%의 관세를 적 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5%의 관세를 쿼터밖관세(out-quota tariff)라고 한다. 만약, 한 해 동안 콩의 수입이 70톤만 되었을 경우 수입쿼터 소진율(fill rate)은 70%가 되고 30톤이 미 소진(underfill)되었다고 말한다.
20) 관세를 부과하는 기본 단위이다. 예를 들어 우리의 경우 쌀이라는 한 가지 품목에는 16개 정도 의 세번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HSK 10단위로 구분하고 있다.
21) 개도국의 관세감축 수준 및 관세감축 면제 적용범위 등을 말한다.
22) 3차 의장 수정안이 revised text가 될지 또는 주요 이슈에 대한 별도의 paper가 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각료회의 일정과 관련하여서는 7월말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간이 더 지체될 경우 9월 각료회의설, DDA 무기연기설, DDA 실패설 등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할 것임을 감안하여 라미 사무총장은 7월 21일 각료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대부분의 참석국들은 각료회의 개최시기 등 향후 일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각료회의 성공을 위해 의장 3차 수정안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각료회의에 이르기까지의 중간과정(Room D 협상과 수평적 협의의 병행 여부, 텍스트 제출 시점 등)에 대해서 라미 사무총장의 보다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시간 제약과 실질적 사안(substance)의 논의 진전간의 균형 차원에서 볼 때, 향후 일정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고, 농업/NAMA 의장 3차 수정안이 중요하므로 수정안 회람 시기는 향후 논의의 진전을 보아 결정되어야 하며 다음 주 협상그룹 회의를 재개하는 것은 좋으나, 실무급 협의 보다는 고위급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EC는 NAMA 분야에서 아직 미결 쟁점이 많이 남아 있어서 난제가 있으나 현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하면서 각료회의 등 향후 일정을 설정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4. 미국 농업법(Farm Bill)이 DDA협상에 미치는 영향

2008 농업법 개정 추진 경과

미국 행정부는 2007년 농업법 개정을 위해 2005년부터 각계 의견을 수렴하였다. 2007년 1월에 미 농무부 2007 농업법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7월에는 미 하원에 2002 농업법과 유사 법안을 통과하였고, 12월에는 미 상원에 2002 농업법과 유사 법안이 통과하였다.

2008년 1월 이후 상하원 합동위원회에서 2008 농업법이 논의되었고, 5월 14일 미 하원에 2008 농업법이 의결되었으며, 5월 15일 미 상원에 의결되었다. 5월 21일 미 부시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었으나, 5월 23일 미 의회에 재의결되었고, 이어 5월 30일 상원에 의결되었다.

2008 농업법의 내용²³⁾

미국의 2008 농업법(The 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of 2008)은 식품, 보전, 무역, 영양, 신용, 농촌개발, 에너지, 산림, 재해보험 등 총 14개 부문(Title)으로 구

미국의 2008 농업법은 식품, 보전, 무역, 영양, 신용, 농촌개발, 에너지, 산림, 재해보험 등 총 1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²³⁾ 작물사업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성되어 있으며, 2002년 농업법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농가의 소득 안전망 및 삶의 질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5년(2008~12) 동안 3,070억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기존의 농업법보다 약 370억 달러(약 37조원)를 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수입보전직불제(Average Crop Revenue Election, ACRE)

수입보전직불제(ACRE)는 2008 농업법에서 신설된 제도로 생산자가 속한 지역(State)의 수입수준으로 수입을 안정적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로 2009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일정수준 이상의 수입을 보장하는 수입보전직불제는 가격 차이만을 고려하여 농가의 수입을 지지하지 못하는 가격보전직불제(Counter-Cyclical Payment, CCP)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생산자는 수입보전직불제와 가격보전직불제 중 원하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2008 농업법은 2002년 농업법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농가의 소득 안전망 및 삶의 질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표 1 수입보전직불제와 가격보전직불제의 비교

구 분	ACRE	CCP
수혜대상	-모든 품목의 생산자	-밀, 식량작물, 면화, 쌀, 유지류 생산자
지급기준	-수입 기준	-가격 기준
발동기준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발동 · 주단위 실제수입 ¹⁾ 이 주단위 보장수입 ²⁾ 보다 적어야 함. · 농가실제수입 ³⁾ 이 농가보장수입 ⁴⁾ 보다 적어야 함. -즉, 일정수준 이상의 수입을 보장	-목표가격을 정해놓고 유효가격(고정직접지불금+시장가격 또는 용자단가 중 높은 것)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때 발동 -즉, 목표가격 이상의 가격을 보장
특 징	-면적당 수입이 크게 변동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농가의 수입을 지원 -다만, 직접지불금 20%와 유통지원용자의 30%를 포기해야 함.	-실제 생산량과 연계되지 않아 농업인의 소득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시장가격이 급락하면 보조금을 과다 지급하게 되고, 시장가격이 상승하면 지급액이 "0"이 될 수 있는 등 정부의 예산 수립에도 어려움이 있음.

- 주: 1) 주 단위 실제수입: $100\% \times \text{주단위 당해년 단수} \times (\text{연평균 국내가격과 용자단가의 } 70\% \text{ 중에서 높은 것})$
 2) 주 단위 보장수입: $90\% \times \text{주단위 기준 단수}(5\text{개년 올림픽 평균단수}) \times \text{보장 가격}(2\text{년 평균 국내가격})$
 3) 농가실제수입: $100\% \times \text{농가 당해년 단수} \times (\text{연평균 국내가격과 용자단가의 } 70\% \text{ 중에서 높은 것})$
 4) 농가보장수입: $100\% \times \text{농가별 기준 단수}(5\text{개년 올림픽 평균 단수}) \times \text{보장 가격}(2\text{년 평균 국내가격})$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

직접지불제는 생산량이나 시장가격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소득보전 정책으로 1996년부터 시행하였다. 밀,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면화, 쌀, 대두, 기타 유지류의 9개 대상품목 및 지급단가를 기존의 농업법과 동일하게 책정하는 등 크게 변화된 부분은 없다.

유통지원융자(Marketing Assistance Loans) 및 용자부족불제(Loan Deficiency Payments)

용자단가를 정해 놓고, 용자단가에 의해 용자를 받고 시장가격 또는 국제가격이 용자단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상환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밀, 보리, 귀리, 유지류, 양모, 꿀의 용자단가를 인상하여 해당 품목 생산자들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였다.

재해보전사업(Disaster Program)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일정정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로 총 38억 5천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여 향후 5년 동안 기존의 작물재해보험사업 등을 확대하여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다.

낙농사업(Dairy Products Program)

우유에 대한 가격지지 방법을 변경하여 정부는 최저가격으로 관련 품목을 구매하여 가격을 지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우유 한 품목에 대해서 정부 구매를 통해 가격지지를 하였지만 체다치즈, 버터, 무지방 분유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우유에 간접적 지원을 확대하였다.

설탕보조사업(Sugar Program)

2010년부터 설탕원료 및 조제설탕에 대한 용자 단가를 각각 1파운드 당 0.75센트 인상하여 설탕에 대한 가격지지를 확대하였다. 또한 수입량과 무관하게 설탕에 대한 국내 소비량의 최소 85%를 국내에서 생산되는 설탕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8 농업법이 DDA협상에 미치는 영향

DDA의 연내 타결을 위해서는 국내보조 분야에서 미국의 신축성²⁴⁾이 요구되지만 2008년 농업법은 농업에 대한 보조금 확대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어 DDA협상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협상 주요국들이 주요 쟁점에서 자국의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DDA협상이 더 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용보조요건에 부합되지 않게 설계되어 있는 재해관련프로그램 등 일부 주요 프로그램을 감축대상 보조로 분류하지 않고 허용보조로 분류하고 있어 WTO 분쟁

24) 시장접근분야에서 EU의 신축성, 국내보조분야에서 미국의 신축성, NAMA분야에서 브라질, 인도 등 강경 개도국들의 신축성이 뒷받침되어야 연내 타결 가능성이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입보전직불제, 직접지불제, 유통지원융자 및 용자부족불제, 재해보전사업, 낙농사업, 설탕보조사업이 있다.

DDA의 연내 타결을 위해서는 국내보조 분야에서 미국의 신축성이 요구되지만 미국의 2008년 농업법은 농업에 대한 보조금 확대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DDA협상 타결의 결과물을 예의 주시하면서 예산을 WTO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협상 주요국은 미국의 보조금 증액은 현재 세계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곡물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브라질, 인도 등 농산물 수출 개도국들은 미국의 농업보조금이 저렴한 인건비로 생산된 자국의 낮은 가격의 곡물에 대한 대 미국 수출 및 무역자유화를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농림부 보도 자료(www.maf.go.kr)

농림부, 알기 쉬운 DDA협상용어 70선, 2008. 6

농림부 해외농업 사이트(www.insidetrade.com)

WTO,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TN/AG/W/4/Rev.2, 19 May 2008